

예 산 총 칙

201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,575,059,419	107,251,783
일반회계	3,301,533,066	99,045,992
특별회계	273,526,353	8,205,791
기타특별회계	273,526,353	8,205,791
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	9,839,909	295,197
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	24,768,148	743,04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03,441,469	6,103,244
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	15,203,765	456,113
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15,303,062	459,092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4,970,000	149,10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,489,06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